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축산발전기금의 사업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지원 근거 신설〉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23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축산발전기금의 사업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지원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6. 23.
3. 회 부 일 : 2026.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축산발전기금의 사업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신 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u>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u>

현행	개정안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③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로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 위생 및 방역,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축사시설의 신·개축 및 현대화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¹⁾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장

1)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⑥ (생략)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 축산업자 및 가축사육업자에 대해서도 축사·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도 이미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 위생 및 방역’,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등이 규정되어 있어 가축사육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법에 이미 가축사육시설의 설치·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축산발전기금의 용도로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사육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별도로 명시할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식품부는 현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축사시설현대화(보조·용자)²⁾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축사시설개선 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스마트 축산단지조성 사업,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회계(기금)-세부사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용자, 보조)(3760-332, 346)

[2025회계연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 전 용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차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본 예산	수정							
축사시설현대화 (보조·용자)	133,517	155,917	15,000	-	170,917	113,169	46,529	11,219	142,653
- 축사시설 개선	77,521	105,194	15,000	-	120,194	66,888	46,529	6,777	82,400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49,721	44,448	-	-	44,448	41,210	-	3,238	53,425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6,275	6,275	-	-	6,275	5,071	-	1,204	2,075
- 오리사육시설 개선	-	-	-	-	-	-	-	-	4,753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
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
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

문 의 처

02)6788-5415

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